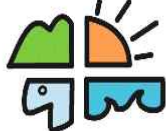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969호 2015년 12월 24일(목)

공 고

○ 폐기공인 공고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415, FAX : 639-210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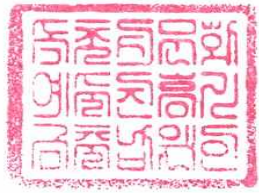
공 고

「속초시 공인조례」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의거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2월 24일

속 초 시 장

1. 공인폐기 사유 : 「속초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폐지
2. 폐기 공인명 및 인영 : 1개

구분	공 인 명	인 영	서체 및 규격	최초사용/폐기 년월일	비 고
폐기	속초시문화예술진흥 기금출납원인 (문화예술담당)		한글전서체 가로(1.8cm)× 세로(1.8cm)	2007.1.1 (2015. 12.24)	